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21. 3. 6. (토) 14시 ~

장소 : 온 · 오프라인 총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자료집 순서

- 차 례 -

I. 경과보고

-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경과보고 1p
- 2. 사명 · 비전 2p
- 3. 조직 구성 2p
- 4. 발기인 명단 3p

II. 심의 · 의결 안건

-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정(안) 4p
- 2.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안) 10p
- 3. 2021년 사업계획(안) 16p
- 4. 2021년 예산(안) 30p
- 5. 기타 안건 31p

- [부록]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안) 32p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경과보고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목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협회의 대외 공신력과 기록전문가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협회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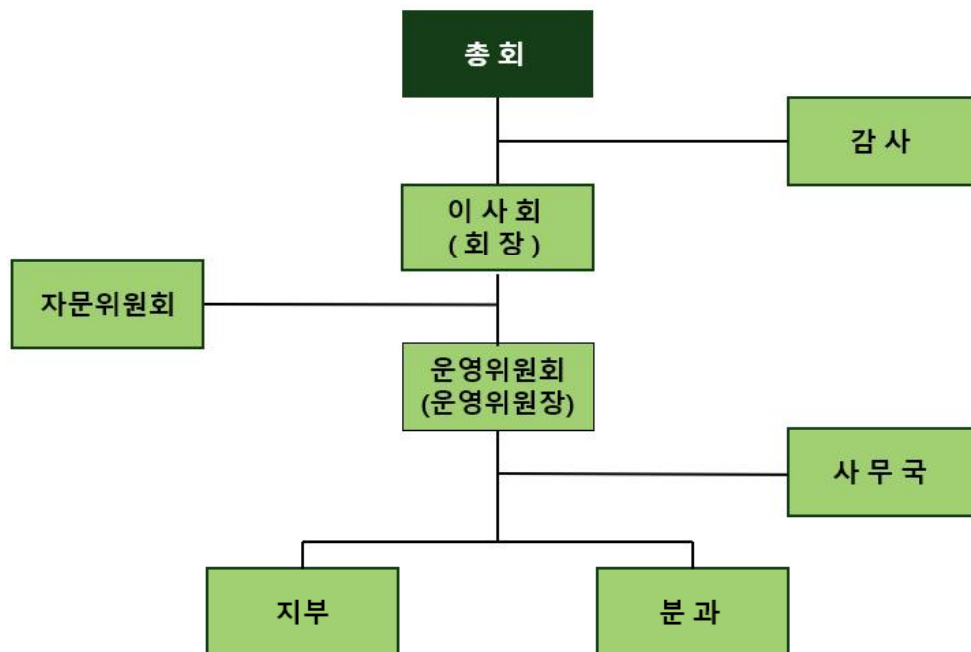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경과

- 2010년 11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이후 매년 정기총회 개최)
- 2011년 01월 : 기록학 예비학교 (이후 매년 개최)
- 2011년 10월 : 제3회 전국기록인대회 참가 (이후 매년 참가)
- 2012년 02월 :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ategory B Member 가입
- 2012년 07월 : 여름학습반 운영 (이후 매년 운영)
- 2013년 07월 : 제1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개최 (이후 매년 개최)
- 2014년 07월 : 기관지 'KARMA' 창간 (이후 매년 발간)
- 2016년 10월 :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공동주관 (이후 매년 공동주관)
- 2018년 02월 : 제8차 정기총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안)' 통과
 - 찬성 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안) 통과
- 2018년 08월 : 협회 홈페이지 법인화 지연사유 보고
 - 지연사유
 - 주무관청에(국가기록원) 설립 대상 법인의 회원이 있을 경우, 특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설립 어려움
 - 관련법(공공기록물법)에 협회 등의 설립 근거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 설립의 어려움
- 2019년 02월 : 제9차 정기총회 법인화 추진 현황 보고
- 2020년 02월 : 제10차 정기총회 법인화 추진 현황 보고
- 2020년 09월 : 운영위원회 제47차 정기회의(하반기 운영위원회 워크숍)
 - 법인화 현황 검토 및 법인 설립 총회 추진 결정
- 2021년 01월 ~ 02월 : 운영위원회 제51차 ~ 제53차 정기회의 법인화 절차 및 정관 제정(안) 검토
- 2021년 03월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2. 사명 · 비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과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조직 구성



- 지부: 부산지부, 전북지부
- 분과: 교육청분과, 대학기록관분과, 민간기록(매뉴스크립트)분과, 전시분과

□ 지부 및 분과 구성

지부 및 분과명		성명	소속
지부	부산지부	조지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북지부	배성중	전주교육대학교
분과	교육청분과	이창순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대학기록관분과	조용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기록관
	민간기록(매뉴스크립트)분과	윤지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시분과	정혜지	한국문헌정보기술

□ 사무국 구성

사무국 명단	직위
김진선	간사
박효은	간사

4. 발기인 명단

■ 발기인 명단 (총 17명)

-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 김진선(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원)
- 문찬일(국가기록원)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박효은(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배성중(전주교육대학교)
- 성민결(강원지방병무청)
- 유재우(전라북도 무주군)
- 윤정훈(대통령기록관)
- 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준봉(법원기록보존소)
- 이철환(대통령기록관)
- 임태원(서울기록원)
- 정혜지(한국문헌정보기술)
- 조지영(부산광역시 사상구)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정(안)

■ 심의·의결 요청 사항

- 아래 ‘신구조문 대조표’ 및 ‘[부록]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안)’을 검토하여 정관(안) 및 정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p>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p>	<p>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영문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과 “KARMA”로 한다.</p>
<p>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 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 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과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식지와 기관지, 교육 자료 등의 제작 및 제공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 대내외 교류와 소통 4.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5. 출판 사업 6.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p>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록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기록전문가 직업윤리 신장 및 전문성 함양 등에 관한 사업 3.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5. 대내외 교류와 소통 6. 소식지와 기관지, 총서, 교육 자료 등 기록문화 발전에 필요한 도서 출판 사업 7.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p>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p>	<p>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단체는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p>

<p>「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p>	<p>③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p>
<p>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p> <p>①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p> <p>②제31조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p> <p>①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p> <p>②제31조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p>
<p>제7조(회원의 입회)</p> <p>①협회 사무처는 입회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의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회원자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p>	<p>제7조(회원의 입회)</p> <p>①협회 사무국은 입회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의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회원자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p>
<p>제8조(회원의 탈퇴)</p> <p>본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원의 탈퇴)</p> <p>본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p>
<p>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①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회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어상 3. 삼의위원장 1인 4. 감사 2인 <p>②감사는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p>	<p>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인 2. 이사 3명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10인 이하 3. 운영위원장 1인 이상 4. 감사 2인
<p>제11조(임원의 임기)</p> <p>①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운영위원장, 삼의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p> <p>③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임원의 임기)</p> <p>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임원의 선출)</p> <p>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②협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④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p> <p>⑤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을 통해서 선출한다.</p>	<p>제12조(임원의 선임)</p> <p>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②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③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을 통해서 선출한다.</p> <p>④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p>

<p>제13조(협회장 및 운영위원장의 직무)</p> <p>①협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u>운영위원장은</u>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u>운영위원장이</u> 이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13조(임원의 직무)</p> <p>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u>총회와 이사회</u>의 의장이 된다.</p> <p>②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제15조(감사의 직무)</p> <p>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p> <p>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u>이사회</u>를 통해 선임된 <u>이사</u>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p> <p>①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u>운영위원장</u>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임원의 보수)</p> <p>①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p> <p>②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6조(임원의 해임)</p> <p>①임기 전의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p> <p>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한다.</p> <p>③협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p> <p>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p> <p>③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p> <p>①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p>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p> <p>협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p>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p> <p>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최</p>
<p>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p> <p>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최</p>	<p>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p> <p>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최</p>

<p>한다.</p> <p>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p> <p>③출석이 어려운 정회원은 의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출석하여 의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④총회장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결의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p>한다.</p> <p>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p> <p>③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의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출석하여 의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4조 (이사회의 기능)</p> <p>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5조(의결정족수)</p> <p>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p> <p>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6조(의결제척 사유)</p> <p>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7조(이사회의 소집과 특례)</p> <p>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p>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p> <p>④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p> <p>①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기별 사업·예산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p>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p> <p>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지부 및 분과의 대표 2.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20인을 넘을 수 없다. 3.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3인을 넘을 수 없다. <p>②운영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p>	<p>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정회원은 20인, 선출직 학생회원은 3인을 넘을 수 없다.</p> <p>②구체적인 자격과 선출 방식 등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p> <p>③운영위원장은 협회 운영을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p>
<p>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p> <p>①지역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p> <p>②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시작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p>	<p>제30조(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p> <p>①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지역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p> <p>③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p>
<p>〈신설〉</p>	<p>제36조(재산의 구분)</p> <p>①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p>

	<p>분한다.</p> <p>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p> <p>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p>〈신설〉</p>	<p>제37조(기본재산의 관리)</p> <p>제36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4조(재정)</p> <p>①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p>②본 협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p>	<p>제38조(재정)</p> <p>①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p>②본 협회의 모든 수입은 기록문화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p>
<p>제39조(결산의 공개)</p> <p>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제43조(결산의 공개)</p> <p>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제40조(기록의 관리)</p> <p>일체의 회계장부는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p>	<p>제44조(기록의 관리)</p> <p>일체의 회계장부는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3조(잔여재산의 처분)</p> <p>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처분한다.</p>	<p>제48조(잔여재산의 귀속)</p> <p>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p>

2.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안)

(1) 임원 선출(안)

■ 정관 제12조에 따른 임원 선출

- 정관 제10조에 따라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분됨
- 이 중 회장, 이사, 감사는 정관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원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임원 후보자 명단
 - 이사 후보자(총 3명)

이름(소속)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한양대(석사) - 한국외대(박사) - (전)한양대학교 박물관 - (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 (현)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월 : 정회원 가입 - 2013년 ~ 2014년 : 사무국장 - 2015년 ~ 2016년 : 사무처장 - 2017년 ~ 현재 : 공동운영위원장

이름(소속)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기록관리 관련 프로젝트 수행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월 : 정회원 가입 - 2019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황진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한국외대(박사) - (전)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3월 : 정회원 가입 - (전)운영위원 - (전)교육국장 - 2018년 ~ 현재 : 운영위원

○ 회장 후보자(총 1명)

이름(소속)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한양대(석사) - 한국외대(박사) - (전)한양대학교 박물관 - (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 (현)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월 : 정회원 가입 - 2013년 ~ 2014년 : 사무국장 - 2015년 ~ 2016년 : 사무처장 - 2017년 ~ 현재 : 공동운영위원장

○ 감사 후보자(총 2명)

이름(소속)	김효진(서울기록원)
경력	- (전)연세대학교 박물관 - (현)서울기록원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3월 : 정회원 가입 - 2019년 ~ 현재 : 감사

이름(소속)	임희연(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경력	- (전)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전)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 2019년 ~ 현재 : 감사

■ 심의의결 요청 사항

임원 후보자 승인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제시

※ 후보자 전원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후보자별 찬성·반대 모두 가능합니다.

(2) 운영위원 선출(안)

■ 정관 제29조에 따른 운영위원 선출

정관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됨

선출직 운영위원은 정관 제29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선출직 운영위원은 정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자 명단(총 17명)

○ 신규 운영위원 후보자: 정회원 (총 16명)

이름(소속)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경력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장 및 교육국장 - 한국기록학회 실행이사 - 한국기록관리학회 대외협력이사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창립 발기인, 추대위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장 및 교육국장 활동 - 2019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김진선(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2017년 ~ 현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간사
협회 활동경력	- 2016년 7월 : 학생회원 가입 - 2016년 ~ 2017년 : 사무국 자원봉사 - 2017년 ~ 2019년 : 학생운영위원 - 2019년 9월 : 정회원 전환 신청 - 2017년 ~ 현재 : 간사 근무 - 2020년 ~ 현재 : 운영위원
특이사항	- 해당 운영위원은 2019년 9월에 정회원으로 전환하여 정회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1.5년임 - 이는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중 제2조제1항제1호 '정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중단 없이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부합하지 않음 -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생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자로 등록함

이름(소속)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력	- 한국외국어대(석사) - 2010년 ~ 2012년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2013년 ~ 2015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5년 ~ 2016년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2017년 : 서울특별시청 - 2018년 ~ 현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남경호(국가보훈처)
경력	- 명지대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및 박사 수료 - 2005년 ~ 현재 : 국가보훈처 기록연구사 - 2016년 ~ 2017년 : 한남대 기록관리 대학원 겸임강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기록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문찬일(국가기록원)
경력	- 한신대(석사) - (전)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국가기록원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9월 : 정회원 가입 - 2015년 : 집행위원 - 2016년 : 소통국 활동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한양대(석사) - 한국외대(박사) - (전)한양대학교 박물관 - (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 (현)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월 : 정회원 가입 - 2013년 ~ 2014년 : 사무국장 - 2015년 ~ 2016년 : 사무처장 - 2017년 ~ 현재 : 공동운영위원장

이름(소속)	성민결(강원지방병무청)
경력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졸 - 2013년 9월 ~ 2014년 5월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근무 - 2014년 9월 ~ 2015년 1월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근무 - 2015년 1월 ~ 2015년 2월 : 416기억저장소 자원봉사 - 2015년 7월 ~ 2015년 10년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근무 - 2016년 9월 ~ 현재 : 강원지방병무청 재직 - 2021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정보관리전공 재학
협회 활동경력	- 2014년 5월 : 학생회원 가입 - 2016년 1월 : 정회원 전환 - 2018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심성보(명지대학교)
경력	- 2007년 8월 : 명지대 기록관리학 석사 - 2014년 2월 : 명지대 기록정보학 박사 - 2007년 ~ 2014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무처장, 연구위원 - 2013년 ~ 2015년 : 한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 - 2015년 ~ 2016년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2017년 ~ 현재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2017년 ~ 현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논평단장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오동석(공무원연금공단)
경력	- 한국외대(석사) - 화성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공무원연금공단
협회 활동경력	- 2010년 9월 : 정회원 가입, 협회준비위, 조직국 - 2011년 ~ 2012년 : 사무국장 근무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유재우(전라북도 무주군)
경력	전라북도 무주군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3월 : 정회원 가입 - 2020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기록관리 관련 프로젝트 수행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월 : 정회원 가입 - 2019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이준봉(법원기록보존소)
경력	- 한신대(석사) - (전)경인지방병무청 - (현)법원기록보존소
협회 활동경력	- 2013년 2월 : 학생회원 가입 - 2015년 9월 : 정회원 전환 - 2015년 ~ 2016년 : 사무국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임광섭(서울우리소리박물관)
경력	-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일반대학원 졸업(석사) - 2014년 ~ 2015년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 2016년 ~ 2017년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년 ~ 2020년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년 ~ 현재 : 서울특별시
협회 활동경력	- 2013년 2월 : 학생회원 가입 - 2017년 2월 : 정회원 전환 - 2017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임태원(서울기록원)
경력	기록관리 기업과 문화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8년 이상 다양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옴
협회 활동경력	- 2012년 10월 : 학생회원 가입 - 2014년 10월 : 정회원 전환 - 2019년 ~ 현재 : 운영위원

이름(소속)	홍덕용(수영구청)
경력	- 부산대(석사) - 칠곡군청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11월 : 학생회원 가입 - 2019년 12월 : 정회원 전환 신청 - 2020년 ~ 현재 : 운영위원
특이사항	- 해당 운영위원은 2019년 12월에 정회원으로 전환하여 정회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약 1년임 - 이는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중 제2조제1항제1호 '정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중단 없이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부합하지 않음 - 그러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자로 등록함

이름(소속)	황진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한국외대(박사) - (전)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협회 활동경력	- 2011년 3월 : 정회원 가입 - (전)운영위원 - (전)교육국장 - 2018년 ~ 현재 : 운영위원

○ 신규 운영위원 후보자: 학생회원 (총 1명)

이름(소속)	박효은(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력	- 중앙대(석사수료)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간사
협회 활동경력	- 2019년 6월 : 학생회원 가입 - 2020년 ~ 현재 : 간사 근무 - 2020년 ~ 현재 : 학생운영위원

■ 심의의결 요청 사항

□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자 승인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제시

※ 후보자 전원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후보자별 찬성·반대 모두 가능합니다.

3. 2021년 사업계획(안)

■ 심의의결 요청 사항

- 아래 2021년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사업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1	운영일반		
사업명	1-1. 인력운영		
사업기간	상시	예산	53,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행정업무 지원 및 집행 보조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간사(주 5일) 2인 활동지원 ○ 일정 : 상시 ○ 예산: 53,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4대 보험 비용 등 포함 			
사업명	1-2. 사무실 운영		
사업기간	상시	예산	1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처리, 회의장소, 물품보관, 협회원 방문 등을 위한 장소 확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무실 계약 자동연장 (3월 만료) : 임대료 인상 등이 발생 시 이전 검토 - 향후 협회 활동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사무실 이전을 위한 후보지 모색 ○ 일정 : 상시 ○ 예산: 1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회의비 포함 - 법인화 추진비용 포함 			
사업명	1-3. 총회 준비 총괄		
사업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3월	예산	1,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활동 보고 및 사업, 예산의 승인 및 협회 집행부 선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정기총회 준비 - 협회 활동 보고 및 사업, 예산의 승인 및 협회 신규 집행부 선출 - 협회원에게 기록관리 주요 현안 공유 			

○ 진행일정

- 제12차 정기총회 준비 (20년 12월 ~ 21년 02월)
 - 20년 12월 - 01월: 사업평가서, 예정산서, 감사자료, 당해년도 회원명단 준비
 - 21년 01월: 감사보고서 및 지부분과보고서 수합, 사업계획서 준비
 - 21년 01월 - 02월: 위임장·서면의결서·자료집 준비
 - 21년 02월: 총회 진행 및 총회 회의록 작성

○ 예산: 1,000,000원

- 장소대관: 500,000원
- 회의비: 500,000원

사업명	1-4. 회원 관리 및 배가		
사업기간	상시	예산	1,000,000원

○ 목적

- 협회의 활동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원 배가 운동 진행
- 협회 재정의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회비증액 운동 진행

○ 내용

- 회원관리
 - 기존 협회원과의 지속적·상시적 연락을 통한 친밀감 형성
- 회원배가운동
 - 정회원 10% 증가를 목표로 신규 정회원 가입 및 준회원·학생회원의 정회원 전환 2021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진행함 (374명 → 412명)
- 회비증액운동
 - 월 회비 400만 원을 목표로 기존 회원의 회비 증액 운동을 2021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320만 원)
- 기금 모금 활동
 - 목적: 사무실 운영, 인건비 지급 및 사업 운영 비용 등 협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 조달
 - 계획: 1천만 원(1차 목표)을 목표로 2021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 진행
 - 현황: 4명 참가 (발전기금 후원 2명, 협회비 증액 2명)

○ 진행방식

- 회원관리
 - 협회 가입 N주년 감사 편지 발송 등과 같이 기존 협회원과 전화,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친밀감을 형성함
- 회원배가운동
 - 학생회원 및 준회원 정회원 전환 추진 및 학생 신규회원 가입 유치
 - 신규 회원가입 시 카르마 최신호 및 감사편지 발송
 - 주요행사(아카비스트 캠프, 기록인대회 등)에서 회원가입 홍보활동 진행
 - '전국 기록관 지도' 사업을 통해 목록화된 기관 및 단체에 협회 리플렛 및 회원가입 권유문 배포
 - 학생회비 권리제한 및 준회원 → 정회원 전환 캠페인 추진

- 협회 리플렛 발송 및 정회원 전환 권유문 배포
- 회원배가를 위한 회원 니즈분석 및 운영 방안 모색
- 회비증액운동
 - 회비 금액에 따른 서비스 차등 지원 검토
- 기금 모금
 - 기금 목표 금액(1천만 원), 추후 사용처 및 모금 현황 등을 보름에 한 번씩 공개하고 홍보
- 홍보업무와의 협력 필요
 - 리플렛, 각 사업별 홍보자료 등
- 법인화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

○ 진행일정

- 02월: 회원 배가 및 기금 모금 홍보 기획
- 03월~12월: 회원 배가 및 기금 모금 홍보
- 03월: 협회원이 원하는 서비스 조사를 통해 니즈 분석
- 04월: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07월: 제9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에서 회원가입 및 회비증액 홍보
- 10월: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에서 회원가입 및 회비증액 홍보
- 회원 및 회비 현황 보고(분기별)
- 기금 모금 현황(매월 15일, 30일)

○ 기대효과

- 협회의 활동과 영향력 강화
- 협회 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 예산 : 1,000,000

- 회원배가운동 700,000원
- 회원 니즈 분석 300,000원

2	조직강화		
사업명	2-1. 지부 및 분과 운영		
사업기간	4월~10월	예산	1,000,000원
○ 목적			
-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 신규 지부 및 분과 설립 추진			
○ 내용			
-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부 및 분과 활동 상황 정기적 공유 및 업무 협조			
- 지부 및 분과 사업비 예산 지원			
- 지부 및 분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전국기록인대회 등)			
- 신규 분과 설립 추진 지원			

- 진행방식
 - 지부 및 분과 지원 계획
 - 지부 및 분과 활동 내용 홍보 및 활동비 지원
 - 지부 및 분과 소개 자료 작성 및 신규 회원에게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홍보하여 지부 및 분과의 신규회원 유치 지원
 - 신규 분과 설립을 위한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분과 설립 추진 지원
 - 다양한 사업에 업무 협조 요청
 - 전국 기록관 지도 제작
 - 창립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 등
- 진행일정
 - 02월~03월: 지부 및 분과 지원 계획 수립 : 활동 홍보 및 활동비 지원 등
 - 03월: 지부 및 분과 소개 자료 제작
 - 07월~08월: 전국기록인대회 세션 모집 지부 및 분과 안내
 - 지부 및 분과 활동 상황 공유(분기별)
 - 지부 및 분과에 업무 협조 요청(상시)
- 기대효과
 -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
- 예산 : 1,000,000원
 - 사업비 보조: 1,000,000원

3	정책대응		
사업명	3-1. 국내협력		
사업기간	상시	예산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 수행(공동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의)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관련 공동 연구수행,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기획 및 제 단체 협력 노력 - 기록관리 관련 이슈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대한 대응 (질의서 발송, 정보공개청구 등) ○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 예산: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및 출장비 100,000*3회 = 300,000원 			
사업명	3-2. 논평 및 정책대응		

사업기간	상시	예산	200,000원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이슈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설정하고 논평으로 정리하여 기록공동체와 소통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혁신 및 기록관리법 개정 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및 방향 제시 - 제기되는 기록관리 관련 이슈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논평 및 정책(안)제시 - 민간 분야 등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록관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카드뉴스, 이슈페이퍼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 시민단체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과 소통 <p>○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월: 논평 정책 팀 재구성 - 03월-10월: 정책 개발 <p>○ 예산: 20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및 출장비 50,000*4회 = 200,000원 			
사업명	3-3. 기록정책포럼운영단		
사업기간	2021년 3월 - 2022년 1월	예산	-
<p>○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에서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세션을 진행한 이후 9차에 걸쳐 아래의 기록관리 중장기발전계획의 주요 사안에 대해 발제·토론을 진행함 - 금년에는 이를 확장하여 '기록관리발전계획 2023-2027'의 수립을 위하여 협회의 공식 조직으로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을 구성하고, 기록정책포럼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p>○ '기록관리발전계획 2023-2027'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기록관리상황을 분석하여, 기록관리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3~2027년 5개년을 대상으로 기록관리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p>○ 기록정책포럼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차 모임) 총회 승인 이후 운영단원의 확정 및 대표자 선출 및 세부계획 마련 - (3월 2차 모임) 주요 주제(10개) 기획·확정 및 제1차 포럼주제와 발표자·토론자 확정 - (3월 3차 모임) 제1차 포럼 진행 전 내용 검토 -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은 포럼이 진행되지 않는 주(1, 3주차)에 포럼의 주제를 확정하고, 원활한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실시 			

- 격주(2, 4주차)로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 회의 진행 (2~3시간)
- 각 회별 1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세부진행 방식 논의 필요)
- 발제자 및 토론자는 가급적 운영단에서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 시 협회 회원여부를 불문하고 섭외함
- 진행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기록인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며, 향후 문서화하여 성과물을 공유함
- 시기별 계획

추진사항	'2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1월
운영단 구성 및 세부계획 확정	■										
선정주제 1차 논의		■	■	■	■	■	■				
선정주제 2차 논의							■	■			
기록인대회 발표									■		
문서화										■	
성과물공유											■

○ 비교

-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은 기존의 협회 논평·정책팀과 별도로 운영하며, 필요 시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함 (논평은 작성하지 않음)
- 매회 진행된 포럼은 Zoom을 녹화하여 단순 컷 편집을 통해 1~2주 내에 공유하도록 함 (협회 유튜브 채널 등)
- 사무국 또는 봉사인원 등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4	교육		
사업명	4-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프로그램 연구		
사업기간	3월-12월	예산	1,000,000원
○ 목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을 위한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함			
○ 내용			
- 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완료 및 내용 분석			
- 협회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 교육 프로그램(안) 도출			
○ 일정			

- 03월~06월: 인터뷰 완료 및 내용 분석
- 07월~08월: 협회원 대상 설문 실시
- 09월~12월: 설문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안) 작성

○ 예산: 1,000,000원

- 인터뷰 사례비: 10,000원*10인=100,000원
- 설문조사 사례비: 5,000원*100인=500,000원
- 회의비: 100,000원*3회=400,000원

사업명	4-2. 기록학 예비학교		
사업기간	3월-5월	예산	400,000원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학 신입생(대학원, 교육원), 기록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학부생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 및 홍보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학 신입생 및 입학 예정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전반적인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 진행 -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와 참가자 간의 소통 방법으로 진행 <p>○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월~03월 : 예비학교 기획(안) 마련 - 02월~03월 : 강연자 및 장소 섭외 - 02월~04월 : 홍보 및 포스터 제작 - 04월 : 강연자료 수합 및 참가신청 안내 - 05월 15일(예정) : 기록학 예비학교 진행 - 05월 : 참석확인증 및 수료증 발급, 참가후기 수집 <p>○ 예상 참여인원 : 30명 내외</p> <p>○ 예산: 40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3명 = 300,000원 - 대관료 = 100,000원 <p>※ 참가비 ; 회원(무료), 비회원(5천원)</p>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교육원 모집시기에 맞춰 예비학교를 진행함으로써 기록학 입학 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사업명	4-3. 기록의 숲 / 여름학습반		
사업기간	4월-8월	예산	600,000원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기록전문가 대상(대학원 1학기 및 2학기, 교육원생 중심)으로 기록관리 현황정보 공유 및 다양한 분야의 기록관리 등에 대한 스터디 진행 			

- 내용
 -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서 부족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함
 - 교육을 통하여 재학생의 협회 및 기록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 실무이론 및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비 기록전문가들의 소속감 및 연대 강화방안 제공
 - 3주 프로그램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매주 수요일에 약 2시간 진행
- 일정
 - 03월~04월 : 기획(안) 마련
 - 03월~04월 : 강연자 및 장소 섭외
 - 05월~06월 : 홍보 및 포스터 제작
 - 07월 : 강연자료 수합 및 참가신청 안내
 - 07월 14일, 21일, 28일(예정) : 학습반/기록의 숲 진행
 - 08월 : 참석확인증 및 수료증 발급, 참가후기 수집
- 예상 참여인원 : 15명 이내
- 예산: 600,000원
 - 강사료 3명 = 300,000원
 - 대관료 3회 = 300,000원
 - ※ 참가비 ; 회원(무료), 비회원(1만원)
- 기대효과
 - 협회 학생회원 유입으로 회원수 증대
 - 강의외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예비 기록전문가들의 소속감 및 유대감 증대

사업명	4-4. (가칭) 대시민교육		
사업기간	7월-10월	예산	500,000원

- 목적
 - 협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싶은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에게 본인만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내용
 -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은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통하여 기록 및 아카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일정
 - 07월~08월 : 기획(안) 마련
 - 07월~08월 : 강연자 및 장소 섭외
 - 07월~08월 : 홍보 및 포스터 제작
 - 08월~09월 : 강연자료 수합 및 참가신청 안내
 - 09월 09일 오후 7시(예정) : (가칭) 대시민교육 진행
 - 10월 : 참석확인증 및 수료증 발급, 참가후기 수집
- 예상 참여인원 : 10명 이내

- 예산: 500,000원
 - 강사료 3명 = 300,000원
 - 대관료 = 100,000원
 - 기념품 = 100,000원
- 기대효과
 - 아카이브 및 기록에 대한 관심 증대
 -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단체 및 기관의 소장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카이브 컨설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증대할 수 있음

5	소통		
사업명	5-1. 국제협력		
사업기간	3월~11월	예산	6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분야 국제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 수행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또는 공동 활동에 대한 협의 - 국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협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 예산: 6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 연회비 200유로 - ESTICA 연회비 200달러 			
사업명	5-2. 제9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사업기간	3월 - 7월	예산	2,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주요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협회의 핵심 프로그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주제 및 세부 진행 방식 확정 - 일정: 7월 2일(금) - 3일(토) - 장소: 온·오프라인, 온라인(ZOOM) 오프라인(미정) - 강연과 토론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와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1일차의 경우, ZOOM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송출 - 2일차의 경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시분과와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록관 전시영상 투 			

어 등을 업로드할 예정

○ 일정

- 02월~03월 : 캠프 기획(안) 마련
- 03월 : 프로그램 기획 및 주최기관 협의
- 04월~05월 : 프로그램 확정 및 발표자 섭외
- 04월~05월 : 캠프준비위원회 구성
- 05월~06월 : 캠프 홍보 및 참여 안내
- 06월 : 캠프 자료집 제작
- 07월 2일(금) - 3일(토) : 제9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진행
- 07월 : 참석확인증 발급, 발표자 영수증 수합, 결과보고

○ 예상 참여인원 : 100명 내외 (회원 70명 / 비회원 30명)

○ 예산: 2,000,000원

- 회의비: 200,000원
- 전시분과 촬영 협조비: 800,000원
- 강사료: 1,000,000원
- ※ 공동 주최기관 예산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재책정
- ※ 참가비 ; 회원(사전등록 5천원), 비회원(사전등록 2만원)
- ※ 현장등록의 경우, 오프라인 진행 확정 시 재책정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행사 진행 시에도 참가비를 납부함으로써 양질의 강연 및 토론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
- 서울기록원 주최기관 참여로 상시학습인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
- 제9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에 협회 아카이브 및 리플렛을 소개함으로써 적극적인 회원 가입 홍보활동 진행

사업명	5-3.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사업기간	3월-10월	예산	-

○ 목적

- 기록관리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기록공동체의 학술대회

○ 내용

- 주관단체로 참여하여 기록인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함

○ 진행일정

- 03월~05월: 전년도 결산 회의 및 주최단체 모집
- 05월~09월: 기획위원회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 06월~10월: 홍보 및 운영 참여

○ 진행방식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협회 담당자(기획위원)를 선정하여 사업진행 관리

- 기록인대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회 상근직 간사 파견			
사업명	5-4. 전국 기록관 지도 제작		
사업기간	2월-12월	예산	-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기록관 지도 제작을 통한 협회원의 지역별 네트워킹 형성에 기여 - 협회원이 소속된 기관 목록화를 통해 회원관리에 활용 - 비협회원이 소속된 기관 목록화를 통해 회원배가운동에 활용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보유 기관 및 단체 목록을 '전국 기록관 지도'에 추가 - 협회 홈페이지, KARMA LETTER 등을 통해 배포 및 홍보 - 비협회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목록을 활용하여 협회소개 및 회원가입 권유문 배포 <p>○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월-05월 민간 기록관 조사(민간기록(매뉴스크립트)분과 협조 요청) - 03월-12월 누락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록 및 민간 기록관 추가 등록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목록에서 누락된 기관 및 단체 검토 및 확인(전 운영위원) - 예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검토 후 지원 			

6	출판홍보		
사업명	6-1. 창립 10주년 기념백서 (KARMA 제8호)		
사업기간	2월-10월	예산	3,000,000원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년간의 협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10주년 기념백서 발간 - 회원들의 문제의식 및 주장, 현장의 경험 및 성과 공유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KARMA구성(연구노트-현장보고-제안과 비평-협회활동)을 축소하고 지난 10년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혁 추가 - 전임 협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간 협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음 - 백서에 대한 프리뷰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p>○ 진행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월: 과월호(KARMA 제7호) 업로드 - 05월~07월: KARMA 제8호 세부 기획 - 06월~08월: 인터뷰 진행 및 녹취록 작성 			

- 08월~10월: 인터뷰 원고 작성 및 협회원 원고 모집
- 10월~11월: 원고 교정 및 편집
- 12월 발간
- 진행방식
 - 인터뷰 지원팀을 모집하여 진행 : 운영위원, 협회원 등 모집
- 기대효과
 - 지난 10년간의 협회 활동을 돌아볼 수 있음
 - 백서 발간을 통해 협회원과의 교류 진행
 - 협회원 모두에게 연락해서 협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 (구분해서)

사업명	6-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아카이브		
사업기간	2월-7월	예산	2,000,000원

- 목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 정보 및 기록을 망라하여 볼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에게 제공하고자 함
- 내용
 - 협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웹 기록
 - 협회 SNS에 업로드된 기록
 - 행사, 연구, 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토론집, 자료집, 리플렛 등
 - 협회 소식지 및 기관지
 - 행사 기념품 스캔 및 사진촬영 후 업로드
- 추진 방식
 - 온·오프라인 자료 정리를 통해 협회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확인
 - 자원봉사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의 자료를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
 - 협회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캠페인 진행
 - 아카이브 베타 오픈 후 이용자 테스트 진행
 - 이용자 테스트 시 나온 사항들 최종 점검 후 아카이브 공식 오픈
- 일정
 - 02월~03월 : 자료 정리 및 선별 및 자원봉사자 모집
 - 2월~04월 : 자료 등록
 - 03월~04월 : 기록물 수집 캠페인 진행
 - 04월 : 아카이브 Beta 오픈
 - 04월~06월 : 이용자 테스트 및 수집 기록물 등록
 - 07월 : 아카이브 오픈

- 예산: 2,000,000원
 - 회의비 : 500,000원
 - 자원활동가 활동비: 1,500,000원
- 기대효과
 - 협회의 기록들을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함으로써 기록학 아카이브의 구축 수준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한국문헌정보기술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협회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음
 - 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협회의 활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사업명	6-3 KARMA LETTER (온라인 소식지)		
------------	-----------------------------------	--	--

사업기간	상시	예산	400,000원
-------------	-----------	-----------	-----------------

- 목적
 - 회원, 협회, 기록관리 분야의 활동, 동향 공유 및 협회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식지 발송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회원들에게 기록관리계 소식 및 정보 전달
- 내용
 - 기록관리분야 주요 일정 공유
 -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기록관리 관련 기사 모음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소식 및 발전기금 모금 안내
- 추진 방식
 - KARMA LETTER 온라인 아카이브 페이지 구축
 - KARMA LETTER 홍보물 제작(비회원 대상)
- 일정
 - 매일 오전 : 기록관리계 뉴스 클리핑
 - 매월 1일 / 15일 : 뉴스레터 발송
 - * 공휴일 및 연휴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 뉴스레터 플랫폼 이용비 : 400,000원

사업명	6-4. 홍보		
------------	----------------	--	--

사업기간	상시	예산	600,000원
-------------	-----------	-----------	-----------------

- 목적
 -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에 알려서 협회의 활동상을 공유
 - 협회와 기록공동체 간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SNS 플랫폼으로 정보전달
- 내용
 - 협회 온라인 홍보 페이지 구축

- 협회 오프라인 홍보 리플렛 제작
 - 협회 홈페이지 새단장
 - 협회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
 - 협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 예산: 600,000원
- 리플렛 제작비 : 300,000원
 -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비 : 200,000원
 -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비 : 100,000원

7	한국기록전문가아카이브		
사업명	7-1. 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		
사업기간	2021년 연중	소요예산	-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전문가 개인(집단)의 기록 장기보존 및 활용 기반 모색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2019 이진렬 선생 추모활동(기록)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데이터를 물리적·지적으로 조직화 - 기록전문가 아카이브 구현 시범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가능하거나 전자적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협회 아카이브 사업과 결합하여 작업 추진 			

4. 2021년 예산(안)

■ 심의의결 요청 사항

- 아래 2021년 예산(안)을 검토하여 2021년 예산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예산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수입 >

(단위: 원)

계정	내용	금 액	비고
회비	월회비(자동이체)	48,000,000	월 400만원
	연회비(연회원, 학생회원 등)	2,000,000	
	후원회원	11,000,000	
후원금	각종 사업 등 후원금	20,000,000	
출연금	기본자산	5,000,000	등록 기본자산
사업비 수익	예비학교 및 학습반	1,000,000	참가비
	아키비스트 캠프	2,000,000	참가비
소계		89,000,000	

< 지출 >

(단위: 원)

계정	내용	금 액	비고
운영일반	인력운영 (2명 이상)	53,000,000	4대 보험 포함
	사무실 운영 (임대료, 관리비, 회의비 등)	15,000,000	
	총회 준비	1,000,000	
	회원관리 및 배가	1,000,000	
	법인화 추진	1,000,000	
조직강화	지부 및 분과 운영 지원	1,000,000	
정책대응	국내협력	300,000	
	논평 및 정책대응	200,000	
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000	교육프로그램 연구 대시민 교육
	기록학 예비학교 및 학습반	1,000,000	
소통	국제협력	600,000	국제회비
	제9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2,000,00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아카이브	2,000,000	
출판·홍보	창립 10주년 백서(KARMA 제8호)	3,000,000	
	온라인소식지 및 홍보자료	1,000,000	
기타	예비비	400,000	
기본자산	기본자산 편입	5,000,000	기본자산 유지
소계		89,000,000	
차기 이월금			0

※ 기본자산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함

5. 기타 안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안)

2021년 3월 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과 “KARM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과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록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기록전문가 직업윤리 신장 및 전문성 함양 등에 관한 사업
3.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5. 대내외 교류와 소통
6. 소식지와 기관지, 총서, 교육 자료 등 기록문화 발전에 필요한 도서 출판 사업
7.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단체는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②제31조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입회) ①협회 사무국은 입회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의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원자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는 제27조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명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10인 이하
3. 운영위원장 1인 이상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을 통해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제14조(임원의 해임) ①임기 전의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
4.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승인
5. 본 협회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③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의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출석하여 의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총회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3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주요 발언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의장과 이사 1인의 기명날인을 한 후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과 특례)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분기별 사업·예산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정회원은 20인, 선출직 학생회원은 3인을 넘을 수 없다.

②구체적인 자격과 선출 방식 등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장은 협회 운영을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30조(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지역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사무국의 구성) ①본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며, 본 협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③기타 사무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3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기록관리 및 유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회의 정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3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협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회장이나 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발전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장 지부 및 분과

제34조(지부의 설치) ①본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각 지부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지부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분과의 설치) ①본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분과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관리) 제36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정) ①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본 협회의 모든 수입은 기록문화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본 협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협회의 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결산의 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종료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결산의 공개)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기록의 관리)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를 포함한다)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제46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서면결의) 본 협회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미리 송부된 양식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안건별로 서면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면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9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협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항목	금액	비고
창립당시 기본자산	5,000,000원	현금
	원	
합계	원	